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99호

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120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규 칙

- 규 칙 제86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 4

훈 령

- 훈 령 제30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 6
○ 훈 령 제30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9

공 고

- 공 고 제2014- 160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 16
○ 공 고 제2014- 1606호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 도림근린공원 외 4개소】 70
입안(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 공 고 제2014- 1607호 2014년 제4차 수용재결 신청 공시송달 공고[소래 72
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
○ 공 고 제2014- 1608호 주식매각 공개 7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0월 21일

남동구 조례 제120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경제환경국, 안전행정국, 남동문화예술회관 및 지식 정보센터”를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으로 하고 제2항 제3호 가목의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남동체육관”을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제21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남동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안 제6조제2항)
 - 총무위원회 소관 :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규 칙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0월 21일

남동구 규칙 제86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의 “의사팀·의정팀”을 “의사팀·의정팀·홍보팀”으로 하고, 제2조 제2항의 “의정담당·의사담당”을 “의정담당·의사담당·홍보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인구 50만 돌파와 더불어 의원 및 직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홍보 및 의원보좌를 위한 홍보팀을 신설하여 의정지원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의회사무국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규명 개정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 팀 신설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2조(하부조직) 제1항, 제2항]
 - 제1항 의정팀·의사팀 ⇒ 의정팀·의사팀·홍보팀
 - 제2항 의정담당·의사담당 ⇒ 의정담당·의사담당·홍보담당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0월 21일

남동구 훈령 제30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각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과 감사·조사업무 담당자는”을 “소속 공무원은”으로,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범죄의”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를 삭제며, 같은 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3.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5.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2항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중 “묵인한 때에는”을 “묵인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발여부의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의 판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와 시행 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정상적인 처벌 관행에 대한 정상화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자 처벌에 대한 내부규정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범죄혐의 사실 보고의무자 확대 (안 제4조제1항)
 - 각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과 감사·조사 업무담당자 → 소속 공무원
- 의무적 고발 대상 기준 강화 (안 제6조제2항)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고발기준을 200만원으로 규정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반드시 고발
- 범죄사실 고발 시기 명확화 (안 제7조제1항)
 -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고발 → 범죄행위사실 확인 즉시 고발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0월 21일

남동구 훈령 제302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위임전결 규정”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의장 권한 사항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의 장
		담 당 자		전문위원	국 장	
		실무급	담당급			
공통사항	1. 주요업무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2. 방침이 결정된 사항 및 변경사항의 통보, 회보	기안			○	
	3. 접수문서의 공람					
	가. 의회관련 주요문서	기안				○
	나. 기타 일반문서					
	1) 중요사항	기안			○	
	2) 일상반복적인 경미한 사항	기안	○			
	4. 조례·규칙 및 훈령·예규(안) 정비	기안				○
	5. 법령·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	기안			○	
	6. 고시문·공고문의 결정	기안			○	
	7.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	기안				○
의 정 팀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기안				○
	2. 의전행사					
	가.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기안			○	
	3.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지정	기안				○
	4.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운영	기안				○
	5.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기안				○
	6.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원	기안				○
	7. 의회 국제교류사업등 추진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대상자 지정	기안				○
	다. 활동상황 결과보고	기안				○
	8. 의원 재산등록 관련사항	기안				○
	9. 의원등록 관리					
	가. 의원등록 계획수립	기안			○	
	나. 의원등록서류 접수 및 기록카드 관리	기안	○			
	다. 의원신분증 및 증명서 발급	기안	○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의 장
		담당자		전문위원	국 장	
		실무급	담당급			
의 정 팀	10. 폐회중 의원 사직서의 처리	기안				○
	11. 결정된 의원의 사직허가 및 불허가 통지	기안				○
	12. 의원 병역사항 신고업무	기안				○
	13. 의장 명의 표창수여	기안				○
	14. 대외기관 표창자 추천					
	가. 의 원	기안				○
	나. 사무국직원	기안			○	
	15. 사무국직원의 임명 추천	기안				○
	16. 의회청사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17. 세입·세출예산편성					
	가. 예산안 수립	기안			○	
	나. 예산안 제출	기안			○	
	18.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 , 집행 및 변경	기안				○
	19. 의원 해외연수, 세미나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의 사 팀	1.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회기운영계획		기안				○
나. 회의소집 공고		기안				○
다. 집회안내서 발송		기안				○
라.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기안				○
마. 회의진행 자료(시나리오 등)		기안				○
바. 5분 자유발언 허가		기안				○
2. 구정질문						
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안				○
나. 구정질문요지 송부		기안				○
다.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		기안				○
3.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안				○
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기안				○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의 장
		담당자		전문위원	국 장	
		실무급	담당급			
의 사 팀	5. 결산검사 계획수립 및 위원선임	기안				○
	6. 행정사무감사					
	가. 행정사무감사 준비계획 수립	기안				○
	나. 행정사무감사계획 취합 본회의 승인요구	기안				○
	다. 자료제출 요구사항 취합 및 송부	기안				○
	라.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취합 및 송부	기안				○
	마. 결과보고 취합 및 본회의 승인요구	기안				○
	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기안				○
	7. 의원 출결					
	가. 본회의장 의원 출결 확인	기안	○			
	나. 청가(5일이내)허가 및 결석처리	기안				○
	다. 장기결석 의원 출석요구	기안				○
	8. 위원회 활동 지원					
	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안				○
	나. 자료제출 요구	기안				○
	9. 투표관련 사항					
	가. 투표종사자 지정	기안	○			
	나. 투표용품 등 준비	기안	○			
	다. 투표진행 시나리오	기안				○
	라. 감표위원 지정	기안				○
	10.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보고					○
	11. 회의록 관리					
	가. 원고복사 및 열람허가	기안				○
	나. 회의록 배부처 조정	기안	○			
	다. 회의록 통고	기안				○
	라. 비공개회의록 열람, 복사 허가	기안				○
	마. 회의록 수정, 삭제	기안				○
	바. 회의록 배부	기안				○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의 장
		담당자		전문위원	국 장	
		실무급	담당급			
의사팀	13. 의안의 접수처리					
	가. 의안의 소관 위원회 지정 및 회부	기안				○
	나.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기안				○
	다. 철회결정 및 통지	기안				○
	라. 의안이송	기안				○
	마. 이송의안 조치(공포등) 결과접수	기안				○
	14. 청원의 접수처리					
	가. 청원의 소관위원회 지정 및 회부	기안				○
	나.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기안				○
	다. 철회(불수리)결정 및 통지	기안				○
	라. 청원이송 및 청원인 통지	기안				○
	마. 이송청원 처리결과 청원인 통지	기안				○
	15. 진정서등의 접수처리					
	가. 소관위원회 지정 및 회부	기안				○
	나. 처리결과 통지	기안				○
	16. 의원요구자료 접수 처리	기안				○
홍보팀	1. 의정활동관련 및 자료발간					
	가. 발간계획 수립	기안				○
	나. 발간자료 작성 및 편집	기안				○
	다. 자료배부 및 보관	기안	○			
	2. 의정백서 및 의회보 발간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수집 및 편집	기안			○	
	다. 발간 및 배포	기안	○			
	3.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가. 홍보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홍보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4.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	기안	○			
	5. 홍보자료 발간					
	가. 의회소식지 발간	기안				○
	나. 의회안내책자 및 리후렛 발간	기안				○
	다. 발간 및 배부	기안	○			
	6. 사진 촬영 및 편집	기안	○			
	7. 일간신문 스크랩 관리	기안	○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의장
		담 당 자		전문 위원	위원장	
		실무급	담임급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보고	기안			○	
	2. 위원회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기안			○	
	3. 의안관련 공청회 등 준비	기안		○		
	4. 위원회 활동 보좌					
	가.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요구	기안			○	
	나. 의사진행 보좌	기안		○		
	다. 일반 행정처리	기안		○		
	5. 의안의 처리					
	가. 의안의 검토, 조사 및 자료 작성	기안		○		
	나. 의안의 검토보고서 작성	기안		○		
	다. 의안의 심사보고서안 작성	기안		○		
	라. 의안의 본회의 부의 의뢰	기안			○	
	6. 청원의 처리					
	가. 검토보고서 작성	기안		○		
	나. 청원심사결과 보고서안 작성	기안		○		
	다.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	기안			○	
	7. 진정서 처리					
	가. 진정서의 내용검토 및 조사보고	기안			○	
	나. 처리결과 통지 의뢰	기안		○		
	8. 위원회 활동지원					
	가. 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기안			○	
	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기안			○	
	다. 위원회 관련자료의 보존 및 관리	기안		○		
	라. 위원회 활동 행정적 처리	기안		○		
	9. 특별위원회 활동					
	가.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	기안			○	
	나. 추진사항 계획서 작성	기안			○	
	다.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기안			○	
	10. 기 타					
	가. 위원회 주관 각종 행사	기안			○	
	나. 전문가 활용 및 소위원회 활동	기안			○	
	다. 비회기중 활동보고	기안			○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홍보팀 신설에 따른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규명 개정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 의장 권한 사항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 정비[안 별표1]
 - 의정팀 단위사무 『의정활동 관련 및 자료 발간』 외 6건에 대하여
홍보팀으로 인계
 - 팀별 단위사무 조정 현황

구분	의정팀		의사팀(변동 없음)		홍보팀(신설)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단위사무	26	19	16	16	0	7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4 -160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10.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사항을 일괄 반영하고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시 조례와 구 조례의 중복조항에 대한 삭제와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나.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각 조항별 순서와 조례의 각 조항의 불합리한 순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안 제7조)
- 나.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및 외국어 병기 (안 제11조, 제13조)
- 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의 위탁대상 추가 (안 20조)
- 라. 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안 제22조)
- 마. 옥외광고업 등록 전 사전교육 이수 추가 (안 제25조)
- 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사이버교육 이수 수료 근거 마련 (안 제26조)
- 사. 수수료 금액 변경 및 감면 근거 (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참조 : 도시경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도시경관과)/전화453-2280,FAX453-28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안 제7조)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및 외국어 병기 (안 제11조, 제13조)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의 위탁대상 추가 (안 20조)
- 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안 제22조)
- 옥외광고업 등록 전 사전교육 이수 추가 (안 제25조)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사이버교육 이수 수료 근거 마련 (안 제26조)
- 수수료 금액 변경 및 감면 근거 (안 제27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허가 및 신고사항 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허가사항의 표시연장)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 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표시방법 완화)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표시방법을 완화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그 구역 범위 또는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 지정 고시된 지역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법 제3조제4항 및 영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그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특구에서의 특례)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10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시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2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당해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은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는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4조(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 여성이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건물 2층 이상의 유리벽면에 표시되는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항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이하“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단체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공공게시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명칭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별지 8호 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별지9호 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 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게시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및 수량
2.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 ① 구청장은 현수막, 벽보, 전단(이하 이 조에서“현수막 등”이라 한다)을 구에 주소를 둔 주민 및 단체에서(이하 조에서“주민 등”이라 한다.) 정비·수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 등이 제1항의 현수막 등의 정비·수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정비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한도는 1개 단체 또는 1인당 각 월 30만원 이하로 하며, 월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신청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⑤ 현수막 등을 정비·수거한 자가 광고물과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상금 지급을 요구 할 때에는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정비·수거한 주민 등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5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 내용 · 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 · 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시민게시판에 게시되는 벽보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목적자 찾기,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현수막
4.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제28조(사용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9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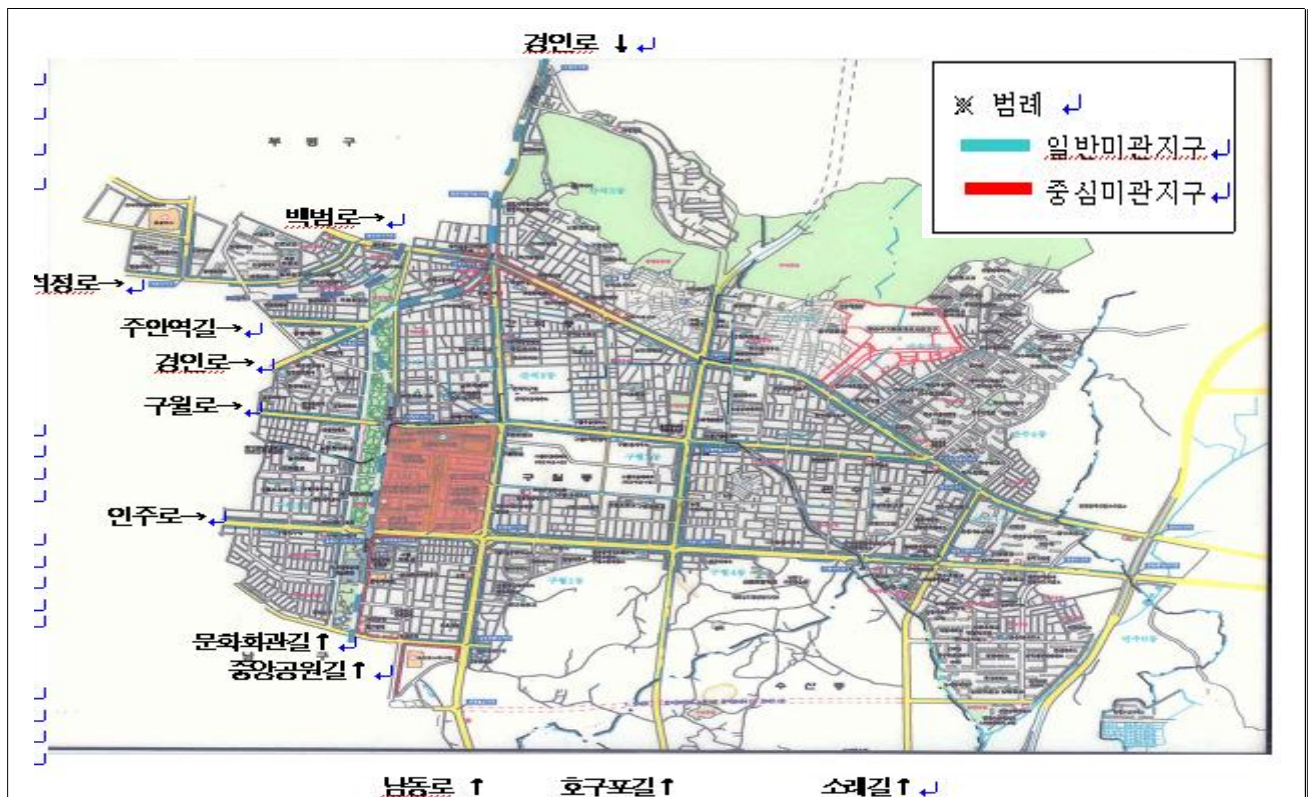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현황 및 표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특정구역 지정현황

i) 주요간선도로변 미관지구

※ 도로양쪽에 접하는 미관지구 내 토지와 건물에 적용함.

도 로 명	기 점	종 점	거 리(km)	비 고
인주로	장수동 산83-4 (치아고개 삼거리)	구월동 1120 (주안4동 경계)	5.88	
구월로	만수동 990 (만수주공 사거리)	구월동 925 (주안6동 경계)	3.41	
백범로	운연동 60-10 (인천시 시경계)	간석동 449-5 (십정2동 경계)	7.10	
경인로	간석동 520-3 (남인천전화국)	간석동 768-5 (부평사거리)	2.55	
남동로	구월동 859-1 (남동경찰서 사거리)	간석동 215-1 (간석오거리)	2.67	
중앙공원길	구월동 1408-2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간석동 395-7 (주원삼거리)	2.32	
문화회관길	구월동 1408-2 (예술회관주차장)	간석동 524 (수림공원 앞 사거리)	2.15	
호구포길	구월동 551-7 (초도노인요양원 입구)	간석동 86-12 (만월터널 입구)	1.95	
소래길	만수동 321-7 (남동구청 정문입구)	만수동 386-2 (만수사거리)	0.90	
석정로	간석동 613-6 (벽돌막 사거리)	간석동 616-98 (현광아파트 앞 사거리)	1.26	
주안역길	간석동 524 (수림공원 앞 사거리)	간석동 395-27 (주안6동 경계)	0.50	
11개소	총 계		30.69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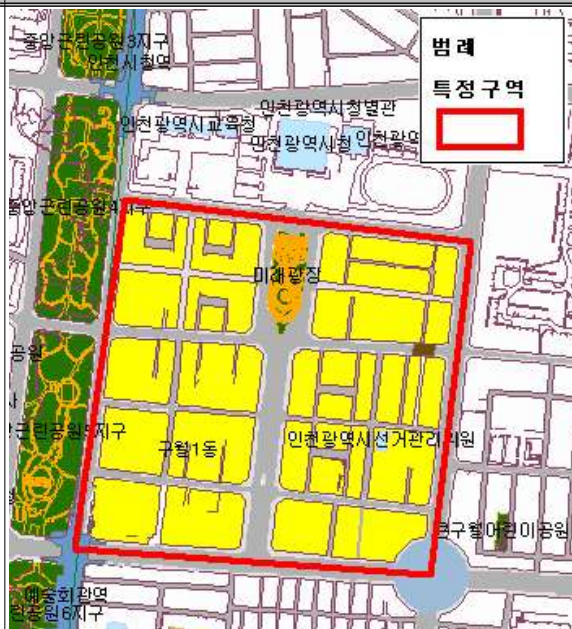
ii) 신개발지구

※ 지구내 도로양쪽에 접하는 업무용 토지 및 건물에 적용함.

연번	지 구 명	위 치	총면적(㎡)	비 고
1	논현2택지개발지구	논현 · 고잔동 일원	2,545,174	지구단위사업계획 참고
2	소래 · 논현도시개발구역	고잔동 591번지 일원	2,383,283	“
3	서창2택지개발지구	서창동, 운연동 일원	2,099,858	“
4	장수구획정리사업지구	장수동 560번지 일원	185,400	“
5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	만수동 80, 109, 110번지 일원	203,170	“
7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	서창동 380번지 일원	428,267	“
8	도림구획정비사업지구	도림동 249번지 일원	155,990	“
9	구월주공재건축지구	구월동 23번지 일원	355,347	“
10	간석주공재건축지구	간석동 939-1번지 일원	129,089	“

iii) 시청 앞 중심미관지구

※ 해당지번 토지와 건물에 적용함

지역명	위 치	비 고
구월동 시청 앞 중심 미관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아래 번지전체 (번지 내 각 호 포함)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2, 1133, 1134, 1135, 1136,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범례 특정구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3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4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5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6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7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8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9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0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1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2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3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4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5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6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7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8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9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20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21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22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23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24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25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26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27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28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29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30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31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32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33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34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35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36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37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38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39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40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41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42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43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44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45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46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47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48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49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50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51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52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53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54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55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56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57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58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59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60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61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62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63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64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65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66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67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68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69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70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71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72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73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74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75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76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77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78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79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80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81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82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83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84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85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86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87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88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89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90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91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92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93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94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95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96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97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98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99지구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00지구

iv) 로데오거리

※ 해당지번 토지와 건물에 적용함.

지역명	위 치	비 고
구월동 로데오 거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아래 번지 전체 (번지 내 각 호 포함)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6, 1467, 1468, 1471 1472, 1473, 1474, 1475	

2. 특정구역 내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1) 광고물의 표시제한 사항

가. 일반적 표시기준

①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1개를 각각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업소의 2면 이상이 도로에 직접 접하여 전시 또는 출입할 수 있는 경우 도로를 향한 업소 상단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간판
2. 의료기관, 약국의 표시등, 이미용업소의 싸인볼
3. 옥상간판, 상단간판, 측, 후면간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이 또는 씨트지 등 유리창에서 돌출되지 아니하게 부착하는 창문이용광고물과 연립형지주이용광고물,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상단이나 주출입구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 등은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 ③ 광고물 등의 바탕색을 흑색 또는 적색으로 표시할 경우, 그 표시 비율이 전체바탕색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광고물 등의 색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 등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 등에 대한 제한사항은 이 표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⑤ 모든 광고물은 부착할 벽면 또는 지주 등에 고정시켜 표시하여야 하며, 자연력에 의하거나 인위적인 방법과 전기 등을 이용한 회전형 광고물과 애드벌룬 등을 특정구역 내에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⑥ 업소광고물 중 1개 이상의 간판에는 영문 등 외국어를 병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로형 간판의 표시 제한

- ①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업소의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업소의 경우에는 도로변을 향한 업소의 상단 벽면에 각각 표시할 수 있다.
- ② 건물정면 1층에는 가로형 간판을 판류, 복합형(판류+입체형), 입체형(글자형을 직접 벽면이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부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2층 이상에는 복합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3층 이하에는 벽면의 경관, 안전 등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류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1개 업소의 상단 벽면에는 1개 업소의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당해업소와 관련이 없는 2개 업소 이상의 간판 또는 광고내용을 연립하여 표시할 수 없다.
- ④ 가로형 간판의 가로길이는 15미터 이내로 당해 업소의 상단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길이는 판류형의 경우에는 1미터 이내로 하고, 입체형의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문자의 세로크기 이내로 한다.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판류형 간판 내에 표시하는 문자와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문자의 세로크기는 건물층수에 따라 1층은 5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은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한다. 다만 건물의 상단에 표시하는 입체형간판의 세로크기는 벽면폭 이내로 한다.

(2층 이상 표시문자 세로크기 계산식)

$50\text{cm} + (\text{해당층수}-1) \times 5\text{cm}$ 이내

- ⑥ 광고표시내용에는 상표 등의 도형을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형태는 자유로이 하되 미풍양속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다. 돌출 간판의 표시 제한

- ①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업소가 우선하여 설치하며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돌출간판의 표시는 도로에 접한 건물의 정면 양쪽 모서리에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돌출간판 게시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접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 모서리에 직각 등의 형태로 인접하여 2줄 이상의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건물 폭이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물 모서리 중 1개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돌출 간판의 최하단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높이에 위치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최상단은 지면으로부터 30미터 미만으로 하되 벽면 모서리의 최상단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돌출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면의 면적은 업소 당 2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의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을 5평방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한

- ① 지주이용간판은 연립형으로 업소 당 표시면적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전체를 사용하는 업소는 단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미관지구에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중심미관지구는 2미터(11층이상 건물은 3미터), 일반미관지구는 2미터를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가각 이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최상단 높이는 5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지주이용간판 1면의 총 표시면적은 연립형의 경우는 6평방미터 이내로, 단독형의 경우는 3평방미터 이내로 판류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선전탑과 유사한 기둥형태(사각기둥,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입체형 지주이용간판은 표시할 수 없다.
- ④ 지주이용간판의 광고내용 표시면은 건물벽면과 일직선 또는 평행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돌출부분은 건축선으로부터 일반지역은 50센티미터 이상, 미관지구는 2미터 이상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 ① 종이, 시트지 등 창문면에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착식 광고물로 표시하여야 하며, 문자의 세로 크기는 1층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은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표시한다.

(2층 이상 표시문자 세로크기 계산식)
 $30\text{cm} + (\text{해당층수}-1) \times 5\text{cm}$ 이내

② 제1항에 의한 문자 등의 광고내용은 가로쓰기 형태로 1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전기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한

- ① 전기이용광고물 중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점멸 또는 화면을 변화시킬 경우 문자 또는 도형이 점멸·변화 후 5초 이내에 다른 문자 또는 도형을 점멸·변화시킬 수 없다.
- ② 전기이용광고물 중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영상으로 나타내는 표시면적 5평방미터 이상인 광고물로 건물의 옥상, 상단,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이하 “영상전광판”이라 한다)에는 이웃한 영상전광판과 수평거리는 35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영상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계획 및 영상전광판의 표출내용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하는 영상전광판의 설치계획이 도시경관 또는 공익상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사. 그 밖의 표시제한 배제 광고물 등

- ① 이 표시방법 제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구청장이 시행하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지구내의 광고물 표시계획에 의한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② 병·의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에서 표시하는 광고물 등과 그 밖의 이 표시방법에서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의 설치 및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2) 광고물 등의 표시완화 사항

가.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완화

- ①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 또는 복합형으로 5층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상단 중 3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간판시범거리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의 계획에 의한 광고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당해 광고물 등에 적용되는 각각의 법규, 계획, 심의결과 등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② 건물의 주출입구 상단 벽면에는 건물명 또는 가로간판을 표시하지 아니한 업소명을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③ 1면의 지름이 60센티미터 이하, 두께 20센티미터 이하의 업소를 상징하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 형태로써 구에서 권장하는 표시방법 및 디자인에 적합한 소형돌출간판은 2층 이하의 당해업소 상단 벽면에 설치할 수 있다.
- ④ 이 표시방법에서 정한 기준 및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구청장이 시행하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지구 내의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 또는 광고물 표시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등을 이용한 회전형 광고물, 영상전광판
 2. 건물별 광고물 표시 계획
 3. 이 표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광고물의 표시가 매우 불합리함을 주장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광고물
 4. 구청장이 도시미관유지를 위하여 광고물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5. 그 밖의 법령과 조례에서 광고물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광고물
- ② 제1항의 심의대상 광고물 중 같은 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모양, 크기, 표시위치, 재질, 구조 등이 유사하고 같은 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종전의 심의사례가 있을 경우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광고물심의를 함에 있어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9조에서 정한 표시방법의 제한범위와 완화범위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없다.

다.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제

- ① 특정구역 내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물별 광고물 표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동의서와 함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의 심의 신청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구역 기준에 따르면 광고물의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2. 광고물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 표시계획으로 특정구역 표시기준보다 건물과 광고물의 경관을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할 경우
-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위 제1항의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신청에 대하여 광고물의 심미성, 안전성, 건물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심의하여 별도의 표시방법을 의결한 경우 이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의 표시를 권장하는 사항

- ① 지역 내 많은 외국인들의 유입에 따라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한 영어 등 국제공용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한글과 병기하도록 한다.
- ② 신축건물의 분양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분양(임대)계약서 내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으로 입점자에게 배부하여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표기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광고물 심의개최 및 법령 등의 적용

- ① 이 기준에서 제한 또는 완화하지 아니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구단위 사업계획구역의 광고물 표시기준은 이 표시방법에 따른다.
- ③ 특정구역 내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홀수 월에 실시하며, 다른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5) 기존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종전의 남동구 고시 제2007-23호, 남동구 고시 제2008-8호, 남동구 고시 제2008-36호, 남동구 고시 제2009-4호로 지정 고시되었거나 이 조례 시행 이후 남동구 관내에서 지정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표시방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표시방법에도 불구하고 당해광고물의 표시기간 동안 이를 설치·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이 만료되고, 이 조례에서 정한 표시방법기준에 부적합한 광고물은 표시기간을 1회에 한하여 당해 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종전의 남동구 고시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 후 표시기간이 연장된 광고물 등은 연장기간 만료 후에는 이 조례에 의한 표시방법에 적합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7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별표 3]

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I. 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 종류	면적(크기)	기준	지급액	비 고
현수막	대형(5㎡이상)	1면	1,000원	
	소형(5㎡미만)	1면	500원	
	죽자, 깃발형 현수막	1면	300원	
벽 보·전 단	20cm×55cm이하	500매	3,000원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광고물	20cm 이하	500매	2,000원	

※ 매월 1인당 지급 최고한도액 : 200,000원

II.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 남동구 전지역
2. 수거보상 신청자격 : 남동구에 거주하는(주민등록된) 주민 및 등록단체
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

수 거 보 상 대 상	제 외 대 상
• 우리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전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휨스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건물벽면 포함) •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불법대출, 음란성광고 등)	• 구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아파트 현관 내부 부착광고물 • 신문지 전단지 • 타 구지역 배포 광고물

4. 보상금 신청

가. 신청기간 : 구청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에 의함

나. 접수처 : 남동구 도시경관과

다. 지참물 : 신분증, 통장사본, 사진자료(현수막의 경우에 한함), 수거광고물

5. 보상금지급 :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 은행계좌로 지급

[별표 4]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3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비 고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0㎡ 초과 3.0㎡ 이하	30만원	
- 3.0㎡ 초과 4.0㎡ 이하	40만원	
- 4.0㎡ 초과 5.0㎡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0㎡ 초과 7.0㎡ 이하	65만원	
- 7.0㎡ 초과 8.0㎡ 이하	75만원	
- 8.0㎡ 초과 9.0㎡ 이하	85만원	
- 9.0㎡ 초과 10.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0㎡ 초과 14.0㎡ 이하	130만원	
- 14.0㎡ 초과 16.0㎡ 이하	145만원	
- 16.0㎡ 초과 18.0㎡ 이하	165만원	
- 18.0㎡ 초과 20.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 면적 20㎡를 초과하 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 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0㎡ 초과 3.0㎡ 이하	30만원	
- 3.0㎡ 초과 4.0㎡ 이하	40만원	
- 4.0㎡ 초과 5.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0㎡ 초과 7.0㎡ 이하	65만원	
- 7.0㎡ 초과 8.0㎡ 이하	75만원	

- 8.0㎡ 초과 9.0㎡ 이하	85만원	
- 9.0㎡ 초과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0㎡ 초과 14.0㎡ 이하	130만원	
- 14.0㎡ 초과 16.0㎡ 이하	150만원	
- 16.0㎡ 초과 18.0㎡ 이하	170만원	
- 18.0㎡ 초과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5㎡ 초과 1.0㎡ 이하	35만원	
- 1.0㎡ 초과 2.0㎡ 이하	40만원	
- 2.0㎡ 초과 3.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5만원	
- 3.5㎡ 초과 4.0㎡ 이하	65만원	
- 4.0㎡ 초과 4.5㎡ 이하	80만원	
- 4.5㎡ 초과 5.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0만원	
- 6.0㎡ 초과 7.0㎡ 이하	130만원	
- 7.0㎡ 초과 8.0㎡ 이하	150만원	
- 8.0㎡ 초과 9.0㎡ 이하	170만원	
- 9.0㎡ 초과 1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0㎡ 초과 3.0㎡ 이하	35만원	
- 3.0㎡ 초과 4.0㎡ 이하	40만원	
- 4.0㎡ 초과 5.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0㎡ 초과 7.0㎡ 이하	65만원	
- 7.0㎡ 초과 8.0㎡ 이하	75만원	
- 8.0㎡ 초과 9.0㎡ 이하	85만원	
- 9.0㎡ 초과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0㎡ 초과 14.0㎡ 이하	130만원	
- 14.0㎡ 초과 16.0㎡ 이하	150만원	
- 16.0㎡ 초과 18.0㎡ 이하	170만원	
- 18.0㎡ 초과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1.0㎡ 이하	210만원	
- 21.0㎡ 초과 30.0㎡ 이하	230만원	
- 30.0㎡ 초과 35.0㎡ 이하	245만원	
- 35.0㎡ 초과 40.0㎡ 이하	260만원	
- 40.0㎡ 초과 45.0㎡ 이하	280만원	
- 45.0㎡ 초과 50.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0㎡ 초과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0㎡ 초과	7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60만원 80만원+ 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150만원 150만원+ 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0㎡ 초과 2.0㎡ 이하	20만원	
- 2.0㎡ 초과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5만원	
- 4.0㎡ 초과 5.0㎡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 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5]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5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6]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시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 (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40,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3,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20,000원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5,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야치광고물(1개)	5,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5,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10,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하. 벽보(50매)	5,000원	
거. 전단(1,000매)	5,000원	
너.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7]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 시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17조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하며 (단순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한다.

[별표 8]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9]

공공게시시설 사용료(제28조 관련)

구 분	사용료	비 고
현수막지정게시대(1건당)	8,000	부가세 별도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A급지(1개 소당)	150,000	부가세 별도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B급지(1개 소당)	100,000	부가세 별도
시민게시판(1개 소당)	2,000	부가세 별도
시민게시판 상단(10개 소당)	20,000	부가세 별도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3만원	
- 0.5㎡ 초과 0.8㎡ 이하		22만원	
- 0.8㎡ 초과 1.0㎡ 미만		32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42만원	
- 1.3㎡ 초과 1.6㎡ 이하		50만원	
- 1.6㎡ 초과 2.0㎡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75만원	
- 2.3㎡ 초과 2.6㎡ 이하		100만원	
- 2.6㎡ 초과 3.0㎡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8만원	
- 0.5㎡ 초과 0.8㎡ 이하		12만원	
- 0.8㎡ 초과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25만원	
- 1.3㎡ 초과 1.6㎡ 이하		33만원	
- 1.6㎡ 초과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8만원	

- 2.3㎡ 초과 2.6㎡ 이하 - 2.6㎡ 초과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67만원 79만원 8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7㎡ 초과 4.4㎡ 이하 - 4.4㎡ 초과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조제1항[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⑱ 변 경 사 항	⑲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도 로 명	⑦ 옥외광고물 소재지소재 구(동)소재지 소재지소재지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옥 외 광 고 물
신 고 필

표 시 기 간

. . . 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4항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6항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인천광역시남동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
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앞 쪽)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검 사 구 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의
도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 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도 로 명 주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처리기간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제4항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수 탁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영업장소재지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위 탁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제3항 [별지 제10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광고물 종류	③ 표시 내용	④ 수량	⑤ 보관 연월일	⑥ 보관 장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당 (취급)자	⑨ 비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제4항[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 량
----------	-----

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 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4항 [별지 제12호서식]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

[illegible]

※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은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전화번호		
	③ 생년월일					
	④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청 내역	광고물 종류별		지원비	⑤수량 및 면적 (㎡)	⑥신청금액 (원)	비 고 (지원내역)
	현수막	대형(5㎡이상)	1,000원			1면 기준
		소형(5㎡미만)	500원			1면 기준
		족자,깃발형 현수막	300원			1면 기준
	벽보,전단	20*55cm이하	3,000원			500매 기준
	음란,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	20cm이하	2,000원			500매 기준
	주 요 수 거 장 소					
신청계좌	⑦ 예금주		⑧ 은행명 및 계좌번호			
신청내역 확 인	광고물 종류별		⑨수량 및 면적(㎡)	⑩지급예정액 (원)	⑪ 담 당 자	
	현수막	대형(5㎡이상)			소속: 직급:	
		소형(5㎡미만)				
		족자,깃발형 현수막				
	벽보,전단	20*55cm이하			성명:	(인)
	음란,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	20cm이하			확인일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illegible]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도 로 명 주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제3호[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 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illegible]

64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7항[별지 제18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	---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도로명 주소	

교육계획	일 시
	장 소

불참사유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 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2항 [별지 제20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도로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시행규칙안 제8조 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작성자 : 도시경관과장 전 해 진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광고물관리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고 제2014-1606호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 도림근린공원 외 4개소】 입안(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도시계획시설 【공원 : 도림근린공원 외 4개소】 조성계획 결정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공원면적(m ²)	비 고
1	도림근린공원	근린공원	남동구 수산동 471-1	417,000	
2	박촌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남동구 만수동 810-3	3,468	
3	경신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남동구 수산동 72-8	1,500	
4	도림1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남동구 도림동 104	1,500	
5	운연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남동구 운연동 144-5	2,100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2014. 10. 21. ~ 2014. 11. 03.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032-453-614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607호

수용재결 신청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문 및 토지조서 등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공고문 및 토지조서 등을 우리구 건설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4. 10. 17 ~ 11. 1
4. 열람 및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
5. 공시송달 내역

가. 송달내용 :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문 및 조서

나. 소 유 자

연번	소유구분	성 명	소재지	대상토지	사 유	비 고
1	토지소유자	한응교	남동구 장수동	410-2, 410-14	수취인불명	

6. 기타

공고문 및 조서는 공시공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14-1608호

주식매각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 문종관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주식매각공고목록

소 속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직 위(직급 등)	회의원	성 명	문종관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보유주식 수				
본인	한화	200	매각	5,140	14.07.01	한국투자증권
	다음	10	매각	1,212	14.07.03	한국투자증권
	네오위즈홀딩스	300	매각	4,320	14.07.03	한국투자증권
	대우조선해양	200	매각	5,150	14.07.03	한국투자증권
	서울반도체	300	매각	12,125	14.07.03	한국투자증권
	에스엔유	500	매각	3,085	14.07.03	한국투자증권
	한화	300	매각	7,970	14.07.04	한국투자증권
	동국제강	1000	매각	7,200	14.07.04	한국투자증권
	현대중공업	100	매각	18,300	14.07.04	한국투자증권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보유주식 수				
본인	현대엘리베이터	330	매각	10,709	14.07.04	한국투자증권
	에이블씨앤씨	60	매각	1,446	14.07.04	한국투자증권
	에스엔유	1500	매각	9,525	14.07.04	한국투자증권
	삼성중공업	500	매각	13,925	14.07.07	한국투자증권
	금호석유	100	매각	8,820	14.07.07	한국투자증권
	다음	60	매각	7,194	14.07.07	한국투자증권
	파트론	500	매각	5,425	14.07.07	한국투자증권
	현대엘리베이터	200	매각	6,410	14.07.08	한국투자증권
	현대엘리베이터	468	매각	13,999	14.07.14	한국투자증권
	에이블씨앤씨	100	매각	2,400	14.07.14	한국투자증권
	팅크웨어	500	매각	4,375	14.07.14	한국투자증권
	롯데케미칼	100	매각	16,850	14.07.17	한국투자증권
	롯데케미칼	100	매각	17,150	14.07.18	한국투자증권
	현대엘리베이터	1	매각	33	14.07.18	한국투자증권
	현대엘리베이터	200	매각	7,187	14.07.18	한국투자증권
	한화	260	매각	6,799	14.07.21	한국투자증권
	현대중공업	100	매각	16,650	14.07.21	한국투자증권
	현대엘리베이터	130	매각	5,011	14.07.21	한국투자증권
	에이블씨앤씨	200	매각	5,760	14.07.21	한국투자증권
	GS	300	매각	13,620	14.07.21	한국투자증권
	크루셜텍	570	매각	4,352	14.07.21	한국투자증권
	OCI	50	매각	8,150	14.07.22	한국투자증권
	현진소재	1300	매각	6,104	14.07.23	한국투자증권
	셀트리온	500	매각	21,190	14.07.23	한국투자증권
	에이블씨앤씨	300	매각	7,895	14.07.23	한국투자증권
	현진소재	700	매각	3,307	14.07.24	한국투자증권
	에이블씨앤씨	700	매각	18,705	14.07.24	한국투자증권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보유주식 수				
본인	크루셜텍	130	매각	977	14.07.24	한국투자증권
	GS	100	매각	3,945	14.07.25	한국투자증권
	OCI	100	매각	16,275	14.07.25	한국투자증권
	롯데케미칼	150	매각	25,575	14.07.25	한국투자증권
	GS건설	200	매각	11,715	14.07.29	한국투자증권
	삼성테크윈	100	매각	4,860	14.07.29	한국투자증권
	중앙백신	200	매각	2,900	14.07.29	한국투자증권
	크루셜텍	500	매각	3,470	14.07.29	한국투자증권
	동국제강	3600	매각	29,284	14.07.30	한국투자증권
	GS건설	700	매각	27,790	14.07.30	한국투자증권
	두산중공업	460	매각	15,571	14.07.30	한국투자증권
	서울반도체	300	매각	11,010	14.07.30	한국투자증권
	현진소재	1700	매각	88,060	14.07.30	한국투자증권